

농촌 생활인구 늘리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지과
2024.8.1.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림부)는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고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'농촌체류형 쉼터'를 도입한다.

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체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다. '농막'이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나 현행법상 농막에서 숙박은 불가능하여 농촌체류형 쉼터가 이를 대체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.

농림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날로 높아지는 귀농·귀촌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. 20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·농촌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의 37.2%가 귀농·귀촌을 원하고, 44.8%는 도시-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농림부는 지난해 농막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바 있으며, 설문조사 결과 80.8%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.*

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허가 없이 최대 33m²까지 설치 가능하며, 최장 12년 사용이 허용된다. 주거를 위한 시설인 만큼 재난과 화재 등에 대비하는 안전기준과 더불어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한다. 또한 기존 농막이 새로운 쉼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, 농막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「농지법」 하위법령을 개정**하여 개인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는 쉼터 도입 및 농막 일부 기능 규제 개선***도 추진할 예정이다.

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막 기능 개선 기대효과

구분	기대효과
농촌경제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농촌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및 경제 활성화 ② 임시숙소 시설 허용: 주말체험영농인과 도시민의 접근 용이성 및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 경험 가능 ③ 일시체류 및 영농체험 기회 확대: 생활인구 증가 및 귀농·귀촌 수요 충족으로 농촌 소멸 대응
영농활동 편의성 도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농막 규제 해소: 영농활동 편의성과 효율성 증진 ② 처마·데크·정화조는 연면적(20m² 이내)에서 제외, 주차장(1면) 허용
국민 편의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 소통 ② 임시숙소로 활용 중인 농막은 새로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적합할 경우 3년 내 전환 가능

출처: 농림축산식품부. (2024).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,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. 8월 1일 보도자료.

*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, 농업인, 귀농·귀촌인 2,595명 대상으로 조사

** 「농지법」 및 하위법령 개정(2024년 하반기 발의 → 2025년 시행)

*** 「농지법」 하위법령 개정(8월 발의 → 12월 시행)